

소규모합병 공고

에스지에이 주식회사(이하 "당사")는 에스지에이시스템즈 주식회사(이하 "에스지에이시스템즈")와 2017년 9월 19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합병 당사회사

가. 존속법인 : 당사

나. 해산법인 : 에스지에이시스템즈(본점 소재지 :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20)

2. 합병 방법 : 당사가 에스지에이시스템즈를 흡수합병 함

3. 합병 비율

- 보통주식 = 1 : 2.7150997 (당사 : 에스지에이시스템즈)

4. 합병기일 : 2017년 12월 8일

5. 소규모 합병 : 당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%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.

6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가. 행사절차 : 2017년 9월 30일 현재 주주명부(실질주주명부 포함)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
나. 제출기간 : 2017년 10월 3일 ~ 2017년 10월 17일
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
1) 명부주주 : 2017년 10월 17일까지 당사 경영기획팀에 제출(전화번호 : 070-5204-0140)

2) 실질주주 : 2017년 10월 12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.

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에스지에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귀하와 에스지에이시스템즈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주번호		주주명	
소유주식의 종류		소유주식수	

2017년 [] 월 [] 일

성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2017년 10월 03일
에스지에이 주식회사
대표이사 은 유 진